

수원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137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1378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합178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엄상섭, 주옥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송태호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1.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합178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20,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 12행 중 "현재 수원가정법원 2022드합5691호로 이혼소송 중이다."를 " 수원가정법원 2022드합5691호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4. 7. 23. C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같은 해 8. 29. C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계설되었고"를 "개설되었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2행 중 "계좌에"를 "두 계좌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중 "[인정근거]"오른쪽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피고가"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피고가 위 인출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라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중" 및 거시 증거, 을 제2, 7호증"을 ", 갑 제4, 12호증, 을 제2, 7, 22, 24, 2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는 2023. 1. 16.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3년경 건강 악화(척추협착증)로 인하여 거동이 힘들어서 피고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겼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3. 6. 29. 자 참고서면부터는 '원고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기 직전인 2004. 4. 25.경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맡기며 비자금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2023. 1. 16.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한 위 진술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위 2023. 1. 16. 자 준비서면 제출 시점까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예금 관리를 위임받은 시점이나 피고가 인출한 예금의 구체적인 액수 자체는 쟁점화되지 아니하였던 점, ① 원고는 2023. 6. 29. 자 참고서면과 함께 2013년경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2023. 10.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비로소 2012. 8. 30.경 출금된 액수를 이 사건 청구의 범위에 포함한 점, 원고는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억력에 한계가 있거나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때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에 관한 입출금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예금액 변동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보이는바(이에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데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 소송 초반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2013년경 이후의 기간에 한정된 주장과 증거만을 제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과 더불어, 아래 ③ 내지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23. 1. 16. 자 준비서면에서 한 위 주장만으로 원고가 2013년경 전에는 피고에게 예금의 관리를 맡기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2023. 6. 29. 자 참고서면 내지 그 이후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 등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예금 관리의 위임 시점에 대하여 위와 다르게 주장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관련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가사조사 당시 망 C은 '일산 집에 들어가며 큰딸(피고)에게 돈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가사조사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

위임 시점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던 2023. 8. 17. 이루어졌는데, 망 C은 2023. 5. 11.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가사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이나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사조사관에게 언급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F동에서 살다가 2004. 4.경 고양시 일산구 G동으로 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사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F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이사 이후에도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 거래는 계속하여 F동에 있는 D은행 E 지점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예금 거래들은 대부분 계좌의 개설과 해지이고 길어도 네 달 정도를 만기로 하는 것이며, 반드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점 방문이 필요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F동 지점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원고와 사이가 나쁘지 아니한 자녀인 피고를 둔 고령의 원고가 비교적 거리가 먼 G동에서 은행 업무를 위해 F동에 있는 위 지점에 자주 방문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순 예금 업무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영업점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고, D은행의 영업점은 원고가 이사를 간 G동 인근에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원고가 G동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직접 자신 명의의 예금을 관리하였다면 그 무렵 거래 지점을 G동 인근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피고는, '원고가 망 C과 함께 원고 명의의 예금 거래가 이루어진 D은행 E 지점과 가까운 성남시와 용인시를 빈번히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망 C 명의의 I 카드 거래내역과 원고가 2002. 5.경부터 2011. 6.경까지 분당 소재 병원(J의원)에 내원한 기록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카드내역은 원고가 아닌 망 C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사용한 것이라거나 망 C과 원고가 동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합계 약 685,000,000원의 입·출금이 있었던 2012. 8. 23. 및 같은 달 30일에는 망 C의 카드 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위 병원에 내원한 날과 D은행 E 지점 예금 거래일이 일치하는 경우는 약 8년의 기간 동안 총 10차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11. 6.경 이후에는 원고가 더 이상 위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원고가 2012. 8. 무렵 직접 자신 명의의 D은행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⑥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으나,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금계좌 관리를 부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위임의 조건 등을 사전에 문서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좌 관리 위임 여부가 문제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좌 관리 위임 여부나 그 시기는 위임에 관한 직접적인 서류 등이 없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⑦ 원고의 넷째 딸인 H은 2021년경(당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한 후이다) 피고와 피고의 아들에게 '원고가 모은 돈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나 그 아들이 이에 대하여 '2억 원을 이미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 을 제6, 8,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 D은행 예금의 반환청구권은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D은행 예금의 반환청구권이 망 C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망 C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오히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관련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망 C 사이에 위 예금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명의의 D은행 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된 D은행 예금은 망 C이 급여를 저축하거나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 임대하면서 수령한 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사실상 망 C 소유의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망 C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일부는 원고 역시 망 C으로부터 그 1/2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원고와 망 C의 공동명의로 체결되었으며, 망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역시 소일거리 등을 통해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금이 망 C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2. 8. 30.경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합계액 약 685,000,000원 중 다시 예금으로 입금된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인출금 515,020,543원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700,020,543원의 인출금을 취득한 점, ②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반복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인출금 중 원고에게 반환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 가량을 망 C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고의 지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위 3억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인출액 185,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예금 700,020,543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20,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중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소영

판사나청

판사김나영